

5. 새로운 제12-가장(반부패)은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12-가장
반부패**

**제12가.1조
적용범위**

이 장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서 뇌물수수 및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하기 위한 조치에 적용된다.

**제12가.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공적 직무의 수행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삼가다는 공무원의 승인된 직무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뇌물방지협약이란 1997년 12월 17일 파리에서 채택된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방지를 위한 협약」을 말한다.

몰수란 법원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영구적 박탈을 말하며, 적용 가능한 경우 추징을 포함한다.

외국 공무원이란 임명직 또는 선출직, 영구직 또는 임시직, 유급 또는 무급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 자연인의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외국의 입법, 집행, 행정 또는 사법상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과,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외국을 위하여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동결 또는 **압수**란 법원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내린 명령에 기초하여 재산의 이전, 전환, 처분 또는 이동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재산을 일시적으로 보관 또는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적 국제기구의 직원이란 공적 국제기구의 공무원 또는 공적 국제기구를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그 기구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연인을 말한다.

재산이란 유체 또는 무체, 동산 또는 부동산, 유형 또는 무형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자산과 이러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법적 문서 또는 증서를 말한다.

공무원이란

- 가. 임명직 또는 선출직, 영구직 또는 임시직, 유급 또는 무급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 개인의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당사국의 입법, 집행, 행정 또는 사법상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
- 나.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을 위한 것을 포함하여, 당사국을 위하여 공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정의되고 그 당사국의 법 내 관련 분야에서 적용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밖의 모든 자연인, 또는
- 다. 당사국의 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정의된 그 밖의 모든 인을 말한다. 그리고

UNCAC란 2003년 10월 31일 뉴욕에서 채택된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을 말한다.

제12가.3조

일반 규정

1. 각 당사국은 국제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서 뇌물수수 및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하기 위한 자국의 결의를 확인한다.
2. 각 당사국은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청렴성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과 이와 관련하

여 각 부문에 상호 보완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3. 각 당사국은 국제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서 뇌물수수 및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OECD, WTO,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및 G20을 포함한 지역 및 다자기구와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적절한 기구와 이니셔티브가 그러한 뇌물수수 및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4. 양 당사국은 그들 각국의 권한 있는 반부패 당국이 다수의 양자 및 다자 포럼에서 실무 관계를 수립했으며,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이 그러한 포럼에서 양 당사국의 공동 노력을 강화하고, 국제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서 뇌물수수 및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하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5. 각 당사국은 뇌물방지협약과 UNCAC에 대한 자국의 준수를 확인한다.

6. 양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범죄에 대한 기술과 적용 가능한 법적 항변 또는 행위의 적법성을 지배하는 법적 원칙에 대한 기술은 각 당사국의 법에 유보되며, 그러한 범죄는 각 당사국의 법에 따라 기소되고 처벌됨을 인정한다.

제12가.4조

뇌물수수 및 부패의 방지와 척결을 위한 조치

1. 각 당사국은 국제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 다음을 자국법에 따른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그 당사국의 공무원 또는 그 당사국을 위하여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인이 자신의 공적 기능을 수행할 때 작위 또는 부작위의 대가로 고의적으로 자신 또는 다른 인을 위하여 금품이나 호의, 약속 또는 이익과 같은 그 밖의 혜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구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나. 그 당사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인이 그 당사국의 공무원 또는 그 당사국을 위하여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인에게 자신의 공적 기능을 수행할 때 작위 또는 부작위의 대가로 고의적으로 자신이나 다른 인을 위하여 금품이나 호의, 약속 또는 이익과 같은 그 밖의 혜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의하거나 공여하는 행위, 그리고

다. 그 당사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인이 국제상거래를 수행하는데 영업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고자, 외국 공무원이 공적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삼가도록 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그 외국 공무원에게 그 공무원 또는 다른 인을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당한 금전적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의,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각 당사국은 장부와 기록의 보존, 재무제표의 공개와 회계 및 감사 기준에 관한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이 조에 기술된 범죄를 저지를 목적상 수행된 다음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부외계좌의 개설

나. 부외거래 또는 불충분하게 확인되는 거래의 실시

다. 가공의 지출 기록

라. 대상이 부정확하게 식별되는 부채의 기입

마. 허위 문서의 사용, 그리고

바. 자국법에 정한 것보다 일찍 부기서류를 고의적으로 파기하는 것

3. 각 당사국은 국제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 공무원이 그 공무원 또는 다른 인의 혜택을 위하여 그 공무원의 직위에 기하여 그 공무원에게 위탁된 재산, 공적 또는 사적 자금이나 증권, 또는 그 밖의 가치물을 횡령, 배임 또는 그 밖의 유용하는 행위를 고의로 행한 경우, 자국의 법에 따라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국내 법 또는 규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4. 각 당사국은 국제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서, 자국의 관할권에 속한 인이 다음을 고의로 행한 경우,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국내 법 또는 규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재산이 범죄의 수익임을 알면서, 그 재산의 위법한 취득원을 은닉 또는 가장할 목적으로 또는 전제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인이 그 인의 행동의 법적 결과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재산을 전환 또는 이전하는 것

나. 재산이 범죄의 수익임을 알면서, 그러한 재산의 실제 성질, 출처, 소재, 처분, 이동 또는 소유권이나 그러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은닉 또는 가장하는 것, 그리고

다. 자국 법 제도의 기본 개념을 조건으로, 수령 시 재산이 범죄의 수익임을 알면서, 그 재산을 취득, 소유 또는 사용하는 것

5. 각 당사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를 집행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지력이 있는 처벌 및 적절한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6. 당사국은 뇌물 그리고 적절한 경우, 제1항에 기술된 범죄 실행의 도모에서 발생한, 그 당사국이 불법으로 여기는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는다.

7. 각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형사 절차에서, 그리고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경우 유죄판결에 기초하지 않은 절차에서 식별, 추적, 동결, 압류 및 몰수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기술된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산을 포함한 수익, 그리고

나. 그러한 범죄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재산, 장비 또는 그 밖의 수단

8. 각 당사국은 급행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9. 각 당사국은 이 장에 기술된 모든 형사범죄에 적용 가능한 공소시효가 범죄의 조사와 기소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허용하도록 보장한다.

제12가.5조

뇌물수수 또는 부패 범죄의 신고인

1. 각 당사국은 제12가.4조에 따른 조치 또는 그러한 조치의 집행을 담당하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자국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대중이 알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어떠한 인이 제12가.4조제1항, 제12가.4조제3항 및 제12가.4조제4항에 기술된 범죄 또는 제12가.4조제2항에 기술된 행위를 암시할 수 있는 정보를 익명 신고 또는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를 포함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제12가.4조제1항, 제12가.4조제3항 및 제12가.4조제4항에 기술된 범죄 또는 제12가.4조제2항에 기술된 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의심되는 사건을 합리적 믿음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에 신고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피고용인을 차별적 또는 징계적 처리로부터 보호하거나 그러한 처리에 대한 구제를 제공하는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¹

제12가.6조

공무원의 청렴성 증진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은 그러한 신고에 대한 추가 요건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권리와 무관하다. 다만, 이러한 요건은 보호 또는 구제에 대한 어떠한 인의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효과를 갖지 않아야 한다.

1. 각 당사국은 국제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서 뇌물수수 및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자국 공무원의 청렴성, 정직 및 책임감을 증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제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가. 그 당사국이 부패에 특히 취약하다고 여기는 공직에 대하여, 개인의 선발과 훈련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러한 개인의 다른 직무로의 순환을 위하여 적합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

나. 공직 기능의 수행 시 공무원 행동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

다. 공무원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이해 충돌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및 절차

라. 고위 공무원 및 그 밖의 적절한 공무원에게 여러가지 중에서 특히 공무원으로서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외부 활동, 취업, 투자, 자산 및 상당한 선물 또는 혜택에 관한 신고를 적절한 당국에 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그리고

마. 공무원이 자신의 기능 수행 시 뇌물수수 및 부패 행위를 알게 된 경우, 그러한 어떠한 행위도 권한 있는 당국에 신고하도록 촉진하는 조치

2. 각 당사국은 공직 기능을 바르고 명예로우며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행동 강령 또는 기준, 그리고 이 항에 따라 제정된 행동 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정당한 경우 징계 또는 그 밖의 절차를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 법 제도의 기본원칙에 합치되는 한도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유념하면서, 제12가.4조에 기술된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를 선고받은 공무원이 적절한 당국에 의하여 적절한 경우, 해직, 정직 또는 전보될 수 있는 절차의 수립을 고려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제도의 기본 원칙에 따라, 그리고 사법독립을 저해하지 않고,

국제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서 사법부 구성원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부패의 기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조치는 사법부 구성원의 행동에 관한 규칙을 포함할 수 있다.

제12가.7조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의 참여

1. 각 당사국은 기업, 시민사회, 비정부기구 및 공동체 기반 기구와 같은 공공 부문 외 개인과 집단이 국제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서 뇌물수수 및 부패를 방지하고 적절하는 데 활발히 참여하도록 증진하기 위하여, 그리고 뇌물수수와 부패의 존재, 원인 및 심각성과 그에 의하여 제기되는 위협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국제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서 당사국은

가. 뇌물수수 및 부패에 대한 무관용에 기여하는 대중홍보활동 및 공공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

나. 전문직 협회와 그 밖의 비정부 기구가 적절한 경우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뇌물수수 및 부패를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한 내부 통제, 윤리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 그리고 행동 강령 및 기준을 개발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하도록 권장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다. 뇌물수수 및 부패를 방지하고 적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포함한 내부 통제, 윤리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하여 회사 경영진이 자신의 연례 보고서에 서술하거나 달리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장려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라. 뇌물수수 및 부패에 관한 정보를 탐색, 수령, 공표 및 배포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민간 기업의 규모와 구조를 고려하여, 민간 기업에 다음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가. 국제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서 뇌물수수 및 부패 행위의 방지와 적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분한 내부 감사 통제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그리고
- 나. 기업의 회계 및 요구되는 재무제표는 적절한 감사 및 인증 절차를 따름을 보장한다.

제12가.8조

뇌물수수 및 부패의 방지와 척결을 위한 조치의 적용과 집행

1. 당사국은 자국의 법 제도의 기본 원칙에 따라,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12가.4조부터 제12가.6조까지를 준수하기 위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를,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²
2. 각 당사국은 뇌물수수 및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하기 위한 자국 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자국의 법 집행, 기소 및 사법 당국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집행에 관한 자국의 자원 배분에 관하여 선의의 결정을 내릴 권리를 보유한다.
3. 양 당사국은 제12가.1조, 제12가.3조 및 제12가.4조에 기술된 범죄와 제12가.4조제2항에 기술된 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법 집행 활동의 효과성을 증대하고자, 각 국의 법 및 행정 제도에 합치되게, 적용 가능한 국제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상호 협력에 대한 양국의 약속을 확인한다.

제12가.9조

제도적 장치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반부패법의 집행과 관련된 개별 사건 또는 특정한 재량적인 결정은 각 당사국의 법과 법적 절차에 따름을 인정한다.

1. 제15.3 조(작업반)에 따라 설치된 반부패 작업반은 각 당사국이 지정한 정부 대표로 구성된다.
2. 작업반의 목적은 이 장의 이행과 운영에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것이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가. 이 장 규정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하고 점검한다.
 - 나. 이 장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장을 제공한다.
 - 다. 적절한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그 밖의 위원회, 작업반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부속기구와 조정한다. 그리고
 - 라. 양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3. 작업반은 양 당사국의 반부패 당국 간 그 밖의 포럼의 업무나 활동을 대체하거나 중복하는 것을 피한다.
4. 작업반은 양 당사국의 합의로, 적절한 전문가에게 회의에 참석하고 작업반의 기능에 해당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자문하도록 청할 수 있다.

제12가.10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이 협정은 뇌물방지협약, UNCAC 또는 2000년 11월 15일 뉴욕에서 채택된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가.11조

협력 및 협의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운영 또는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대화, 정보 교환 및 협력을 통한 모든 노력을 한다.
2.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은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방안을 고려하기 위하여 반부패 작업반 내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한다.

제12가.12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14장(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